

## 장학규정

제정 1996. 9. 1  
 개정 2002. 9. 1  
 개정 2003. 4. 1  
 개정 2004. 3. 8  
 개정 2006. 6.  
 개정 2008. 3. 3  
 개정 2009. 5. 1  
 개정 2010. 3. 15  
 개정 2012. 4. 9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1  
 개정 2013. 9. 1  
 개정 2014. 4. 1  
 개정 2014. 9. 1  
 개정 2015.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9.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6. 1  
 개정 2017. 9. 1  
개정 2018.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거 학생의 면학열을 고취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개인 등이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①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장학위원회와 스쿨(학과)장학위원회를 둔다.

### 1. 대학장학위원회

- 가. 교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 전반의 장학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나. 대학장학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는 장학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 2. 스쿨(학과)장학위원회

- 가. 스쿨원(학과)장, 5인 내외의 스쿨(학과)소속교원 및 장학담당으로 구성하며 스쿨(학과)의 장학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나. 스쿨(학과)장학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는 스쿨 및 학과행정실에서 주관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①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지급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본 대학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가. 본부집행장학금 : 본부부서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나. 스쿨(학과)집행장학금 : 스쿨(학과)에 배정된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국가기관의 지원금 또는 사회단체, 산업체 및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제6조(장학금의 종류)** ① 교내장학금

1. 본부집행장학금

가. 삭제

나. 삭제

다. 공로장학금

라. 근로장학금

마. 보훈장학금

바. 교직원가족장학금

사. 삭제

아. 전공심화과정장학금

자. 형제·자매장학금

차. 외국학생장학금

카. 특별장학금

타. 삭제

파.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장학금

하. 기숙사장학금

거. 새터민장학금

너. 희망장학금

더. 봉사장학금

2. 스쿨(학과)집행장학금

가. 성적장학금

나. CK비전장학금

다. 스쿨근로장학금

라. 스쿨(학과)특별장학금

마. 해외연수장학금

- 바.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 사. 신입생특기장학금
  - 아. 삭제
- ② 교외장학금
1. 한국장학재단장학금
  2. 보훈장학금
  3. 교수장학금
  4. 1호에서 3호 이외의 비등록금,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회계 재원의 장학금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장학생 선발일자에 재학중인 자(단, 학기 3/4선 군휴학자 중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는 학생은 예외로 인정한다.)
2.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단, 시행세칙내 성적제한이 없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3. 전공심화과정생의 경우는 해당학기에 8학점 이상, 졸업연한 초과자의 경우는 해당학기에 10학점 이상 신청한 자
4. 해당학기에 징계사실이 없는 자(또는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말소 처리가 완료된 자)
5. 스쿨(학과)집행장학금의 경우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을 완료한 상태)한 자(단,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자, 스쿨근로장학 대상자, 신청 자격이 미달 되는 자, 기타의 경우 스쿨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018.06.01. 개정)

**제8조(스쿨(학과)집행장학금의 배정 및 선발기준)** 스쿨(학과)집행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인원에 준하여 스쿨(학과)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내 모든 장학금은 가능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은 장학규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단, 원활한 장학금 운용을 위해 재학인원 기준일자는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절차)**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1. 본부집행장학금
  - 가. 장학규정에 근거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장학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한다.
2. 스쿨(학과)집행장학금
  - 가. 장학규정에 근거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스쿨(학과)장학위원의 심의로 확정한다.
3. 교외장학금
  - 가. 지원기관의 규정 및 기탁자의 별도 요구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교내장학금에 준하여 선발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지급한다. 단, 근로장학금은 월별로 지급한다.
2. 공로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한국장학재단 외의 기관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총장이 당해연도 가용 재원에 따라 장학종류와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에 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 삭제

**제13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제적자 및 미등록 휴학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3. 학업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자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세칙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7조(장학생의 자격) 3. 전공심화과정생의 경우는 해당학기에 8학점 이상, 졸업연한 초과자의 경우는 해당학기에 10학점 이상 신청한 자’의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